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- 12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19호, 2023.6.29.)」 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3년 6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(치과항목 발취)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.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245-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항 목 | 제 목 | 세부인정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다245-1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 | 다245-1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의 급여기준 | 다245-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(파노라마 등)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다 음 - 가. 치아부위 |

| 항 목 | 제 목 | 세부인정사항 |
|-----|-----|--|
| | | <p>1) 근관(신경)치료의 경우</p> <p>가) 통상적인 근관(신경)치료시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: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</p> <p>나) 치근단절제(Apicoectomy)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, 이공,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</p> <p>2) 차41마(3)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</p> <p>3) 제3대구치는 치근단,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</p> <p>4)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 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</p> <p>나.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</p> <p>1)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</p> <p>2) 타액선 결석</p> <p>3)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</p> <p>4) LeFort I, II, III 골절 혹은 협골부, 안와의 blow-out 골절, 하악골의 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, 비골골절, 전두동골절, 비·전두사골복합체골절</p> <p>5)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·후 평가</p> <p>6)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</p> <p>7) 터키안내 양성종양,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, Empty Sella</p> <p>다. 측두하악관절부위</p> <p>1) 강직(Ankylosis)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</p> |

| 항 목 | 제 목 | 세부인정사항 |
|-----|-----|--|
| | | <p>임상적 개구제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)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(퇴행성, 류마티스성, 감염성) 및 과두형태의 이상 3)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) 악관절수술의 전, 후 평가 <p>라. 부비동(Paranasal) 및 측두골(Temporal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,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) 비부비동염, 중이염에서 두개내,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) 중이(middle ear), 내이(inner ear)나 내이도(internal auditory canal)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 (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,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) 4)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)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 시 6)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)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)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)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<p>마. 상지 및 하지 부위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(관절, 수족골) 2)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)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)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|

| 항 목 | 제 목 | 세부인정사항 |
|-----|-----|---|
| | | 5)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)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)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|

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| | 개 정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|---|---|
| 항목 | 제목 | 세부인정사항 | 항목 | 제목 | 세부인정사항 | |
| I.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| | | I.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| | | |
| 다245-1 Cone Beam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|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의 급여기준 |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(파노라마 등)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다 음 - 가. 치아부위 1) 근관(신경)치료의 경우 가) ~ 나) <생략> 2) 매복치의 경우(제3대구치포함) 가) 차41마(3)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나) 제3대구치는 치근단,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 | 다245-1 Cone Beam 전산화 단층 영상진단 | 다245-1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 진단의 급여기준 | 다245-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(파노라마 등)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다 음 - 가. 치아부위 1) 근관(신경)치료의 경우 가) ~ 나) <현행과 같음> <삭제> 2) 차41마(3)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3) 제3대구치는 치근단,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 | (제·개정 사유) 분류번호 추가 및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삭제, 방사선 단순영상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단순골절을 포함한 하악골의 골절에서 |

| 현 행 | | | 개 정 | | | 비고 |
|-----|----|---|-----|----|---|------------|
| 항목 | 제목 | 세부인정사항 | 항목 | 제목 | 세부인정사항 | |
| | | <p>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</p> <p>3)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</p> <p>나.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</p> <p>1)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</p> <p>2) 타액선 결석</p> <p>3)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</p> <p>4) LeFort I, II, III 골절 혹은 협골부, 안와의 blow-out 골절, 하악골의 <u>복합</u>, <u>복잡</u> 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, 비골골절, 전두동골절, 비·전두사골복합체골절</p> <p>5)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·후 평가</p> <p>6)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</p> <p>7) 터키안내 양성종양,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, Empty Sella</p> <p>다.~마. <생략></p> | | | <p>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</p> <p>4)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</p> <p>나.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</p> <p>1)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</p> <p>2) 타액선 결석</p> <p>3)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</p> <p>4) LeFort I, II, III 골절 혹은 협골부, 안와의 blow-out 골절, 하악골의 <삭제> 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, 비골골절, 전두동골절, 비·전두사골복합체골절</p> <p>5)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·후 평가</p> <p>6)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</p> <p>7) 터키안내 양성종양,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, Empty Sella</p> <p>다.~마. <현행과 같음></p> | 적용토록 문구 변경 |